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19직권0003600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직권조사

주 문

1. 교육부장관에게,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각급학교에서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정량평가) 기준 마련 시,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감점처리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 감점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육아휴직자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우리 위원회는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기간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하여,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진정인들에게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감점처리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중 교육현장에서 교원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19. 8. 26.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감점 처리하거나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항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직권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0,02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조사 방법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관할 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고, 17개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17개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자료,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성과상여금의 지급 근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이며, 위 규정 제1항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 목적은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 17개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에서 매 해 각 시·도교육청으로 시달되는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따라, 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초·중·고등학교에 시달한다.

위 지침 및 위 지급 계획에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 교육부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교사 성과급 다면평가방법은 정성평가 20%, 정량평가 80% 비율로 반영하고, 전체 교

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각 학교별 다면평가위원회에서 다면평가 평가지표를 결정하되, 정량평가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성과평가 시 적용하고 있는 ‘정량평가’의 평가요소(100점 만점)는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 개발(10점), 담당업무(30점)로 구성되며, 각 평가요소의 세부평가항목은 각 학교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어 약간 상이하나 대개 유사한 세부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위원회가 권고한 진정 사건의 피진정학교의 정량평가 평가요소 및 세부평가항목은 아래 <표 1> 과 같다.

<표 1> 정량평가 평가요소별 주요 세부평가항목

평가요소(100점)	세부평가항목
학습지도(30점)	수업시수, 연구수업실시 여부, 수업공개 횟수, 6학년 지도 여부
생활지도(30점)	기본생활지도, 생활지도 곤란도
담당업무(30점)	보직업무곤란도, 결강시수, 담임업무
전문성 개발(10점)	연수이수시간, 연구실적

바. 17개 시·도교육감이 제출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10,027개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조사대상 학교 10,027개교 중 교사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933개교로, 전체 조사대상 학교 중 9.3%에 해당한다. 위 933개교 중 초등학교가 470개교(50.3%),

중학교 299개교(32.1%), 고등학교가 164개교(17.6%)이며, 17개 시·도교육청별 조사대상 학교 수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는 학교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 학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현황

교육청	조사대상 학교				조사대상 학교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66	273	125	964	121	78	31	230 (23.8%)
부산	297	135	64	496	23	36	14	73 (14.7%)
대구	233	90	43	366	15	4	9	28 (7.6%)
인천	245	135	92	472	26	50	31	107 (22.6%)
광주	152	91	67	310	18	8	0	26 (8.3%)
대전	146	72	35	253	24	11	5	40 (15.8%)
울산	119	61	45	225	31	16	9	56 (24.8%)
세종	47	23	16	86	12	9	5	26 (30.2%)
경기도	1,282	546	340	2,168	24	25	20	69 (3.1%)
강원도	345	149	102	596	8	9	4	21 (3.5%)
충청북도	258	107	63	428	8	5	4	17 (3.9%)
충청남도	416	189	120	725	9	6	3	18 (2.5%)
전라북도	417	209	128	754	40	15	4	59 (7.8%)
전라남도	425	214	98	737	8	0	1	9 (1.2%)
경상북도	469	189	93	751	20	10	10	40 (5.3%)
경상남도	295	135	93	523	78	17	12	107 (0.4%)

제주도	113	39	21	173	5	0	2	7 (4.0%)
계	5,825	2,657	1,545	10,027	470 (50.3%)	299 (32.1%)	164 (17.6%)	933 (9.3%)

2) 정량평가 항목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933개교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을 살펴보면, ①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472개교), ② 정량평가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201개교), ③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89개교), ④ 비근무기간 만큼 차등감점(84개교), ⑤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27개교), ⑥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정등급 또는 특정점수(최저등급 또는 최저점 부여 등) 부여(26개교), ⑦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17개교), ⑧ 정량평가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3개교) 등이다.

3) 위 933개교의 정량평가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비근무기간에 해당하며, 질병휴직, 병가, 연가 등도 비근무기간에 포함된다. 자세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은 <표 3>와 같으며, 17개 시·도교육청별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은 <별지 2>와 같다.

<표 3> 정량평가 항목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비율)
1.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472 (50.6%)
2.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201 (21.6%)
3.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89 (9.5%)

4.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84 (9.0%)
5.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27 (2.9%)
6.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특정등급(또는 특정점수)을 부여 -휴직교사 및 휴직기간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최하점수 부여(12곳) -특정등급 이하 평가(3곳) -3개월 이상 휴직자에게는 'B'등급 부여(1곳) -6개월 이하 근무시 모든 항목에서 최저점 부여(3곳) -정량평가 학습지도항목(20점)에서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 : 4.5점(1곳) -수업시수 항목에서 수업결손 기간이 3개월 초과 시 최하점수 기준 부여(1곳) -4개 평가항목에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시 최저점 부여 (1곳) -3개 평가항목에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시 낮은 점수 부여(1곳) -총계점수 상관없이 30일 이상 병가나 휴직을 할 경우는 최하등급 부여(1곳) -1개월 이상 휴직자에게는 'B'등급 부여(1곳) -3개월 이상 휴직자 등 최상급 등급 주지 못함(1곳)	26 (2.8%)
7.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총점수×실근무 개월 수/12(10곳), -총점수×50%~70%(3곳) -9개월 이하 실근무자는 총점에서 10점 감점(1곳) -6개월 이하 근무자 : 각 평가항목별 점수×1/2(1곳) -총점수×0.05×휴직한 개월 수(1곳) -총점수-휴직월수×0.25점(1곳)	17 (1.8%)
8. 정량평가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육아휴직 등 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 개월×0.3점 차감(최저점수 7점)(1곳) -육아휴직기간 중 근무개월에 따른 점수부여(1곳) -업무추진공헌도(15점)에서 육아휴직 6개월일 경우 3점 감점(1곳)	3 (0.3%)
9. 기타 -근무일수에서 휴직기간 제외 -주당수업시수 계산 시 휴직기간의 수업시수를 '0시간'으로 계산 등	14 (1.5%)
총 학교 수	933 (100%)

5. 판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위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항은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바항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조사 대상 학교 10,027개교 중 933개교에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정량평가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 933개교 중 930개교는 정량평가 세부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최하등급 또는 최하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성과평가 기간 동안 비근무기간이 있는 교사에게 비근무기간만큼 점수를 감점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내용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근무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자들이 육아휴직기간만큼 정량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3개교의 경우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성과급에서 우대하여 교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 등으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 및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는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 시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점수를 감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률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비근무경력으로 보아 감점하도록 하거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량평가에서 감점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각급학교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해당 지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22.

위원장 정문자

위원 배복주

위원 임성택

<별지 1>

관 련 법 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6]

3.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항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전부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 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나.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제4호·제7호·제7호의2 및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별지 2>

17개 시·도교육청별 정량평가 중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98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52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37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4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11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특정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 -휴직교사 및 휴직기간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최하점수 부여(12곳) -특정등급 이하평가(3곳) -3개월 이상 휴직자에게는 'B'등급 부여(1곳)	16
정량평가 총점에서 감점하는 경우 -9월 이하 실근무자는 총점에서 10점 감점(1곳) -총점수×50%~70%(3곳) -총점수×실근무기간/12(2곳)	6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육아휴직 등 휴직이 있는 경우 휴직개월×0.3점 차감(최저점수 7점)(1곳) -육아휴직기간 중 근무개월에 따른 점수부여(1곳)	2
기타	4
총계	230개교

2. 부산광역시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33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2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19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3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13
정량평가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6개월 이하 근무시 모든 항목에서 최저점 부여	3
총계	73개교

3. 대구광역시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7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7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1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6개월 이하 근무자 : 각 평가항목별 점수×1/2	1
기타	1
총계	28개교

4. 인천광역시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68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3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7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1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15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총점×0.05×휴직한 월 수 -본인총점수×근무개월수/12	2
기타(실제근무기간 12개월 가산 : 1개월×0.25점 가산)	1
총계	107개교

5. 광주광역시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21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1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1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특정점수 부여	1

-정량평가 학습지도항목(20점)에서 실근무기간 6개월 미만 : 4.5점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총점수×실근무기간/12	1
총계	26개교

6. 대전광역시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27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2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2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4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특정등급(또는 점수) 부여 -수업시수 항목에서 수업결손 기간이 3개월 초과 시 최하점수 기준 부여 -4개 평가항목에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시 최저점 부여 -3개 평가항목에서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시 낮은 점수 부여	3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총점수×실근무기간/12	1
기타	1
총계	40개교

7. 울산광역시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22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13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4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11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총점수×실근무기간/12(3곳)	3
기타	3
총계	56개교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4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3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5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2
기타	1
총계	26개교

9. 경기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57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5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2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4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특정등급 부여 -총계점수와 상관없이 30일 이상 병가나 휴직을 할 경우는 최하 등급 부여	1
총계	69개교

10. 강원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9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6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3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특정등급 부여 -1개월 이상 휴직자에게는 'B'등급 부여	1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총점-휴직월수×0.25점	1
총계	21개교

11. 충청북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0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6
총계	17개교

12. 충청남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6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1
기타	1
총계	18개교

13. 전라북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9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9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21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1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6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총점수×실근무기간/12	1
정량평가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 -업무추진공헌도(15점)에서 육아휴직 6개월일 경우 3점 감점	1
기타	1
총계	59개교

14. 전라남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2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4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1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2
총계	9개교

15. 경상북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4
정량평가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1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17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1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5
정량평가 총점에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점수 환산 -총점수×근무개월수/12	1
기타	1
총계	40개교

16. 경상남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40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54
평가항목 중 복무기간 항목에서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점수 부여	7
비근무기간만큼 차등감점	5
비근무기간이 있는 자에게 특정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휴직자 등 최상급 등급 주지 못함.	1
총계	107개교

1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육아휴직자에 대한 주요 감점내용	학교수
평가항목 중 일부항목에서 실근무기간 반영하여 차등점수 부여	5
평가항목 중 근무기간 항목에서 근무기간별 차등점수 부여	2
총계	7개교